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2022년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2022년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22년 3월 8일

○ 회부일자: 2022년 3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에서 설립예정인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출연목적

- 충청북도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공공부문 역할 확대를 위하여 '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'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
- 2022년 설립예정인 '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'의 원활한 설립·운영으로 방문요양, 가사간병 등 유사성격 돌봄사업의 통합·연계 제공 및 감염병 등 재난 발생에 따른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

○ 출연 예정금액 : 1,560백만원

○ 출연내역 :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, 설치·운영비

5. 검토의견

○ 법적근거

-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였음.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법적요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□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
제29조(보조금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·도 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○ 종합의견

- 본 출연계획안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부 주도로 분산된 사회복지 서비스의 통합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‘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’ 설립에 필요한 사업비(1,560백만원)를 출연하려는 것임.
- 출연금 1,560백만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따른 초기 설치비와 운영비로 기본재산(100백만원),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액(980백만원)과 도비매칭비용(480백만원)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- 현재 전국 사회서비스원은 총 14개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. '19년 4개소(서울·경기·대구·경남)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, '20년 7개소(인천·대전·광주·강원·충남·세종·전남), '21년 3개소(전북·울산·제주)가 설립되었으며, '22년에는 충북 등이 설립예정임.

-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복지시설 수탁 운영과 민간 제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등을 위해 설립되는 기관으로써, 사회서비스원의 차질없는 설립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

- 본 사회서비스원 개원 이후에는 종합재가센터 설치를 비롯하여, 국·공립 어린이집, 다함께 돌봄센터,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영유아시설부터 어르신 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국공립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등 충청북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설립초기에 일부 혼선과 어려움이 예상되므로, 먼저 시행중인 타시도 사회서비스원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벤치마킹하고 사회복지 전반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추진하는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